

2. 전통문화예술의 발굴·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

3.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·보수

4.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

5.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② 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회계공무원)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획실장

2. 분임운용관 : 문화공보담당관

3. 기금출납원 : 문화계장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결산 및 보고)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계규정 준용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4 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5. 5. 12.

다. 상정일자 : 95. 5. 22.

라. 의결일자 : 95. 5. 2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

나. 내 용

○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에탁하는 것이 은행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어 노인복지기금 에탁방법을 개정하고자함. (조례 제3조 제2항)

※ “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에탁한다”를 안정성 및 이율등을 감안하여 에탁한다”로 개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해 당	없 음

4. 토론요지 : 신설은행들은 장기에금에 한하여 높은 이자율을 지급해 주고 있으나, 이자율이 높은 만큼 불안요소도 따르고 있어 안정성을 중시함이 타당하다고 봄.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없음

6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
☐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83
의 결	95. 5. 30
년 월 일	(제 38 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사유

-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예탁하는 것이 은행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

2. 주요급자

- 노인복지기금의 예탁방법 결정

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”를 “안정성 및 이율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기금의운용관리)① (생략)		제3조(기금의운용관리)①(현행과 같은)		
② 기금은 은행법, 농업협동조합법,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부 산하기관등에서 <u>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.</u>		②		
				
		 <u>안정성 및 이율등</u>		
		<u>을 감안하여 예탁한다.</u>		
③~④ (생략)		③~④ (현행과 같은)		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5. 5. 12